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702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산림보호직원의 보수체계를 현실화	2
2. 부칙	6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4. 10. 16.

다. 회 부 일 : 2024. 10.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963년 현행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재직기간의 장단(長短)과 무관하게 임업서기라는 단일직급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근무의욕 저하 및 타성적인 업무수행 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임.

이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수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육성 등을 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치우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산림보호직원의 보수체계를 현실화(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개정안은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를 임업직렬 공무원의 직무와 동일하게 하고 그 보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9~6급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u>직무</u>) 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u>임업서기</u> 의 직무를 수행한다. <u><신설></u>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u>직무 및 보수</u>) ① ----- ----- ----- ----- ----- <u>임업직렬 공무원</u> ----- -----. ② <u>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한다.</u> <u>1. 재직기간 7년 미만: 임업서기보</u>

현행	개정안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①·② (생략) ③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u>자격</u> , <u>보수</u> , 교육, 복무, 복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 재직기간 7년 이상 14년 미 만: <u>임업서기</u> 3. 재직기간 14년 이상 24년 미 만: <u>임업주사보</u> 4. 재직기간 24년 이상: <u>임업주 사</u>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자격</u> ----- ----- -----.

현행법 제4조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 보호직원은 임업서기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보수체계는 산림보호직원의 사기 저하 및 타성적인 업무수행 등을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산림보호직원과 임용 및 복무 구조가 유사한 청원경찰과 비교해 보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6조¹⁾에 따라 재직기간이 15년

1)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 23년 미만은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 그 재직기간에 따라 임업직렬 공무원의 해당 직급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장기복무를 유인함으로써 나아가 안정적·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산림보호직원과 임업직렬 공무원은 업무 범위와 책임도가 상이하여 직무와 보수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곤란하고, 산림보호직원의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관리감독과 보조지원으로 구분할 정도로 직무상 난이도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산림보호직원의 직급을 구분할 만한 실익이 낮다는 의견이 있고, 산림청도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보수체계의 현실화를 통해 이들의 근로 의욕 고취 및 주도적 업무수행을 유인하기 위한 입법 취지, 산림청의 신중 검토 의견, 산림보호직원의 직무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하여 개정안을 수용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산림보호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취지이나, 그 직무를 임업직렬 공무원 전체의 직무로 확대하고 있는바, 현재 산림보호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²⁾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보수지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고, 그 밖에 보수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118억 5,900만원(연평균 23억 7,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산림보호직원의 직무) 법 제4조에 따른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지휘 등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관한 업무
2. 산림병해충의 예찰(豫察)·조사·분석과 방제에 관한 업무
3. 불법 산림훼손지의 단속 및 현장조사 등 산림훼손 방지 업무
4. 산림생물다양성과 산림생태계의 보호 등 각종 산림보호 업무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업무의 보조

2. 부칙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청의 하위법령 정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다만, 개정법률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 중인 산림 보호직원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산림보호직원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23